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는 2025. 9. 15.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내용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및 여신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이번 대책의 주된 골자 중 하나는 도급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025. 6. 27.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위 의무 외에도 건설공사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며, 법 제정 절차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또 하나 눈여겨볼 사항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4조제1항),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하청이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끔 하여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구상되었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장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내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2조제1항). 정부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종래 이사회 보고사항이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¹⁾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은 재해율, 안전보건 예산액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재 수단	요건 및 제재 내용
다수 사고 발생에 따른 과징금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 과징금 심사위원회 신설 후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가능 - (개정안) '연간 다수 사망'시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가능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 (건설업)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사유 발생 시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 (건설업 외 업종)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 예정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제재 수단	요건 및 제재 내용
공공입찰 참가 제한	-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를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 입찰 참가 제한 기간 확대 - 낙찰자 선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평가 강화
여신심사, 보증, 분양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 심사 기준, 대출 약정 등 개선 - 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시 안전도평가 도입 등 심사 강화 -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선고 시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

2. 시사점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새정부에 들어서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구체화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제시되었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환으로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의 시행에서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부과되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한 대출·투자 제한 등의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에 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ulchon Legal Update

Related Areas

노동

송무

부동산 건설

Contact

조상욱 변호사

02-528-5355

swcho@yulchon.com

이시원 변호사

02-528-6147

shiwonlee@yulchon.com

안범진 변호사

02-528-5919

bcan@yulchon.com

김수현 변호사

02-528-5070

soohyun@yulchon.com

정원 변호사

02-528-5283

wjung@yulchon.com

정유철 변호사

02-528-5212

ycjung@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02-528-5252

dwchung@yulchon.com

허우영 변호사

02-528-5522

wyhur@yulchon.com

김동현 변호사

02-528-5312

donghyunkim@yulchon.com

서호원 변호사

02-528-6629

hwseo@yulchon.com

정지원 고문

02-528-5406

jiweon@yulchon.com